

農業近代化促進法에 對하여

趙 洪 照

I. 改正의 必要性

1. 全天候農地造成事業을 效果的으로 完遂하기 為하여 서는 무엇보다 먼저 非生產의이고 非能率의인 事業機構의 體制를 整備強化하여야 한다.
2. 農地改良事業이란 土地의 潛在的 生產力を 增強시키는 事業이며 本事業完遂本體가 끝 增產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本事業에 科學的營農技術이 複合되어야 한다.
意欲의增產作業——單位面積生産高增大——農家所得增大
3. 農業近代化作業의 效果
平作效(果減產防止——消極的效果)
增產效果(積極的效果)
로 二大別할수 있다.
4. 現農地改良組合은 減產防止(消極的效果) 程度의 役割밖에 못하므로 增產效果(積極的效果)를 거둘수 있는 方向으로 改編刷新(農業振興組合)하여 農業振興公社의 奉下組織으로 만들어 一絲不亂한 指導體制를 確立하여야 한다.
5. 現行農村近代化促進法의 性格考察
 - a. 現行法은 農地改良組合에 關한 事項을 主로 規定
 - b. 過去法令(土地改良事業法)의 範圍를 크게 發展시키지 못하였다.
 - c. 農業振興公社와 農地改良組合을 完全히 分離 別個 取扱을 하여 業務는 同質의인데 制度는 異質의 으로 取扱하므로써 相互連結이 缺如되었다.
 - d. 農地改良組合의 監督에 關한 權限은 全部 農林部長官에게 歸屬케 하고 市, 道知事에게는 委任에 依한 權限賦與만이 되어 있다.
6. 農地改良事業의 施行方向轉換
 - A. 國家가 支援하는 可及的 大規模事業을 為主로 實施.
 - 가) 過去는 小乘의이며 局地開發을 中心으로 事業을 施行했기 때문에 大規模事業을 實施할 境遇過去의 施設物은 無用化되었다.
 - 나) 今後는 統合的이며 大團地事業을 實施하여야 한다.

- 다) 農業機械化를 前提로 해서 事業을 實施
- 라) 營農의 多角化와 農地의 効率化를 期하기 為하여는 集團의in 團地事業이 要求된다.
- B. 小規模事業은 市長, 郡守, 또는 土地所有者가 實施토록 하되 補助金은 地方費로서 交付

II. 改正方案

1. 業務의 專門化

現行法上 多元的(農林部, 市道, 市郡 및 農業振興公社)인 行政監督과 事業施行節次를 單一化해서 公社가 獨自의in 地位를 確立해서 業務의 專門化로 經費 및 時間의 節減을 期한다.

2. 國家施策樹立의 統一性維持

事業施行의 專擔機關인 公社로 하여금 國家施策에 따른 総合計劃을 樹立케 하여 恒久의 旱害對策과 食糧增產의 重點의in 事業을 實施케 한다.

3. 政府施策의 早期達成

全國各地에 散在되어 있는 農地改良組合을 末端組織으로 하여 市郡과 市道의 義務의이고 絶對의in 協助下에 “피라밀”型의 機構體制를 確立해서 公社가 主軸이 되어 食糧增產을 期한다.

4. 單位生產性增加

農地의 効率化를 期하기 為해서 既設 農地改良組合이 管理하고 있는 40萬ha의 蒙利地의 營農方法을 科學的으로 改良하기 為한 指導事業을 徹底히 實施한다. (公社가 專擔함)

III. 改正事項

1. 農地改良組合을 農業振興組合으로 改編하여 農業振興公社의 奉下組合體로 한다.
2. 市道知事が 管掌하고 있는 組合에 對한 指導監督權(人事, 財政, 監查)을 農業振興公社가 管掌한다.
3. 公社와 組合의 財政形態는 各各 獨立케 하되 資金需給은 相互連結시켜 利用케 한다.
4. 管轄行政廳의 義務事項(同意事項等)을 規定한다.
5. 施設物引繼에 關한 事項은 具體的으로 明示할것.
6. 農業振興公社의 機構를 建設과 生產의 二大支柱로 한다.
7. 既히 融資券 長期債(約 100億원)와 今後 融資券 長

- 期債의 取扱을 “農協”으로부터 引受하여 農業振興公
社가 取扱한다. (金庫設置)
8. 農林部 對 農業振興公社의 行政節次(特許) 事業施
行에 關한)를大幅 簡素化한다.
 - 示方에 依한 事業執行——
 9. 組合과 組合職員을 為한 共濟事業實施

IV. 法改正의 利點

1. 時間, 人力, 經費節減
2. 業務(事業)處理 迅速化.
强力 한 事業推進을 期할 수 있음.
3. 國庫節約
4. 不健全組合의 更生
5. 任職員의 身分保障(組合)
6. 行政體系의 一元化로 業務簡素化
7. 協同體의 構成으로 相互利益增進
8. 綜合的인 開發을 期하므로써 事業의 經濟性을 높임

V. 問題 點

1. 市, 道知事, 財務部, 農協이 反對할 것임.

2. 農業振興公社의 機構改編과 性格의 變化.

VI. 結論

以上과 같이 農村近代化促進法을 改正하여 農地改良組合(農業振興組合)을 農業振興公社 傘下組織體로 吸收하여 全天候農業用水開發의 完成, 科學的營農技術指導事業, 耕地整理事業, 農業의 機械化, 農家住宅改良事業等等을 推進하여 生產과 建設을 表裏一體화시켜, 非生產的인 非能率의인 在來의 思考方式을 拂拭하고 生產의이고 能率의인 前進하는 方向으로 體系 機構를 整備하고 合理的인 運營을 하므로써

大統領閣下께서 畫宵로 軫念하시는 우리나라 農村의近代化農民의 所得增大의 꿈이 이루어져서 躍進하는富強한 偉大한 農村이 이루어짐에 따라 諸分野에 걸쳐都市와 農村의 隔差가縮小되고 살기 좋은 農村이 建設될 것이다.

政府는 此際에 勇斷을 내려 即興的의 아닌 恒久的인 農業近代化作業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農業機械化의 方向

——施策面——

이 칠 주*

농업근대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은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이루는데는 농업의 기계화 외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농업이 중노동을 요구하는 힘든 작업으로서 이를 편한 한 작업으로 바꾸는 방법도 기계화가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와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며 급속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농업의 기계화는 최단시일 내에 강력한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위와같은 필요성에 따라 기계화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가로막는 문제점이 허다하다. 우선 자연적인 조건으로 평야지가 협소하고 임야지가 7 활을 겹하고 있는 점과 강우량이 작업시기인 하절에 집중적으로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인위적인 것으로는 농민의 빈곤

및 영세성 단작 위주와 기계 기술의 습득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과 특히 농민 스스로나 위정자가 농업의 기계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뿐리 깊이 박힌 사고방식이 무엇보다도 기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의 타개방법으로는 경지정리 및 농지의 교환 분합과 관개배수등 토지기반 조성과 기계화를 위한 작부 체계 확립 및 경종 기술의 개량 그리고 기계의 공동 이용조직이나 협업화 농장의 육성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기계화 정책수립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담당기구가 마련되어져야 하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연구개발 사업이 병행되어져야 하며 또한 농민의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과 기계 이용의 원활을 위한 “아후터써비스”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제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심의 위원회 구성이 또한 절실